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5 - 52호

『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8월 21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과 운용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인한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관련하여 「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, 위원회의 심의사항 명시(안 제2조)

-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(안 제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5년 9월 3일(목)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64, 팩스 032-440-878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
운영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(박승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9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. 8 . 21.

발 의 자 : 박승희, 공병건, 박병만,
이강호, 제갈원영, 손철운
(찬성자 4인)

1. 제안이유

-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과 운용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인한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관련하여 「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, 위원회의 심의사항 명시(안 제2조)
-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기능)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「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7조를 준용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
2.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
3. 그 밖에 지방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개최하고, 임시회는 지방재정공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, 안건의 사안이 단순·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제4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, 재정공시업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.

제5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6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재정법 ○ 제10조(교육·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) ○ 제32조의3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) ○ 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) ☐ 지방재정법 시행령 ○ 제68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) ☐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○ 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○ 제7조(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재정법】

제10조(교육·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) 이 법(제59조는 제외한다)에서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이나 "시·도지사"는 "교육감"으로, "행정자치부장관"은 "교육부장관"으로, "행정자치부"는 "교육부"로, "지방재정"은 "지방교육재정"으로, "행정자치부령"은 "교육부령"으로 각각 본다.

제32조의3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)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)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
1. 세입·세출예산의 운용상황(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)
2. 재무제표
3. 채권관리 현황
4. 기금운용 현황
5.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
6. 지역통합재정통계
7.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정보
8. 중기지방재정계획
9.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
10.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
11.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
12.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
13.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
14. 투자심사사업, 지방채 발행사업, 민간자본 유치사업, 보증채무사업의 현황
15.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
 - 가. 교부현황
 - 나. 성과평가 결과
 - 다.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
 - 라.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
1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
 -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,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"는 "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"로 본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는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지방재정법 시행령】

- 제68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"공통공시"라 한다)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"특수공시"라 한다)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
 2. 지방재정분석·진단의 결과
 3.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
 4.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.
- ④ 삭제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

【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】

- 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
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·공립학교의 교원
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
원을 의미한다)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
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임명직 위원 :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
2. 위촉직 위원 :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, 학부모 등 교육·학예사무에 관
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

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
중에서 호선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예산담당서기
관이 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
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
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④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
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부패연루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
정되는 경우
3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
4.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척·기피·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
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5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외부위원(민간전문가, 대학교수, 학부모 등)이 위촉될 경우, 위원회 개최 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
○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추정)

- 구성 : 위원 15명(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3명, 민간위원 12명) 이내
- 운영 : 연평균 2~3회 운영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심의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한 결과 소요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정됨

4. 작성자

교육위원회 박 승 희 의원